

November 2011

soundings

이번 호: Rainy Sky에서 태양이 나온다 - Rainy Sky vs Kookmin Bank

Rainy Sky에서 태양이 나온다 Rainy Sky vs Kookmin Bank

클럽의 회원은 6 척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한국의 JINSE Shipbuilding사와 조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실무 관례에 따라 인도전 분할금(Pre-delivery instalments)에 대한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R/G)이 제공되었는데, 이는 국민은행으로 부터 발행되었다. 그 후 조선소는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결국 워크-아웃 (debt workout) 절차를 밟게 되었고 선주는 R/G 에 의거 선지급분 미화 4,500 만 달러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였다.

R/G의 핵심조항은 다음과 같다;

(2) 계약조건에 의거, 선주가 계약조건(terms)에 따라 선박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약, 취소 혹은 선박이 전손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종료 이전에 선주가 인도전에 지급한 분할금에 대해 선주가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본 계약에 의거 선주가 인도전 분할금 지급을 합의한데 대하여 우리(은행)는 주 채무자로서, 선주의 최초 서면요청에 따라 계약 하에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그러한 모든 금원 (all such sums)을 취소불가적 및 무조건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R/G의 제 (3)항에 기재된 "계약 하에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그러한 모든 금원(all such sums due to you under the contract)" 이 (2)항에 언급되어 있는 특별상환(specific repayments) 또는 지급(payments)이나 (3)항의 서두에 있는 '인도전 분할금'(pre-delivery installments)'을 지칭하는 것인가의 여부이다.

국민은행 측은 기본적으로 3항의 조건과 선주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그러한 모든 금원은 2항에 언급되어있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따라서 선박의 거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취소 혹은 선박이 전손되었을 경우와 선주의 조달품에 대한 환급만을 의미하며, 조선계약 제 12조 3항이 조선소의 파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는 조선소 파산의 경우에는 R/G 하의 책임(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선주의 청구는 일차 영국 상사법원 (English Commercial Court)에서 심의 되었고 회원이 승소하였다. (2009년). 법원은 R/G의 3항에 사용된 조건들(terms)은 명확하며, R/G의 주 목적중 하나는 조선소의 파산으로부터 선주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 (Court of Appeal judgment)

은행측은 항소 허가를 득하고 사건은 항소심에서 Simon Tucky 판사, Patten 판사 그리고 Thorpe 판사에 의해 심리되었다. 이중 Simon Tucky 판사는 다음과 같은 판결과 함께 선주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어서...



The sun comes out on the Rainy Sky - RAINY SKY vs Kookmin Bank

“은행측 논리에 따르면, 보증서는 조선소 파산의 경우만 제외한 인도전 분할금의 반환 또는 환급을 선박 매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경우들을 다룬다고 주장한다. 왜 계약당사자(혹은 매수자측의 선박 금융기관)가 은행 측의 해석에 따른 조건으로 합의하였어야 했는지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상업적 이유(commercial reason)가 제시되지 않았고, 거슬러 보면 이 논리는 상업적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나 Patten 판사는 해당 항의 문구는 명확하며 조선소의 파산은 R/G 하에서의 지급 요건을 유발하지 못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환급보증서의 내용에서 파산시의 환급을 누락한 이유에 대하여 추측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물론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파산)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하고 명백하였을 보증서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을 정당화 하기에는 부족하다. 어떤 이유로 조선소가 자신이 파산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은행보증을 제공할 수 없었거나 제공하길 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선주는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

Thorpe 판사가 Patten 판사의 견해에 동조 함으로서 은행 측의 항소는 승소하였다.(2010 년)

대법원의 판결 (Supreme Court judgement)

사건은 항소허가를 득하여 2011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Phillips 판사, Mance 판사, Clarke 판사, Kerr 판사 그리고 Wilson 판사에 의하여 심리가 열렸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었는데, 은행측에서는 계약은 계약에 사용된 단어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상업적 정황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상업적 고려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원의 주장은 비즈니스의 일반 상식에 대한 고려가 순수한 해석 절차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식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상업적으로 실용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라며, 나아가 항소심 에서는 다수(2 인의 판사)가 비즈니스 거래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상식에 관한 상사법원의 평가에 충분한 무게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011년 11월 2일 내린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선주의 손을 들어 주었다.

Clark 판사는 판사 전원 일치하에 판결하였으며 동 판사는 ‘비즈니스 또는 보편적인 상업적 이치’가 해석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 ... 당사자들이 사용한 언어는 종종 가능한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원화된 방식이 해석 방식의 기본이며 그 가운데 법원은 사용된 언어를 검토하고 계약시점의 상황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자연히 가지고 있었을 계약배경에 관한 제반 지식을 똑같이 갖춘 어느 한 합리적인 사람이 당사자들이 뜻했던 바가 무엇이라고 이해하였을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에있어 법원은 관련된 주위의 모든 관련 상황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경우 법원은 비즈니스의 보편적인 이치와 일치하는 해석을 택하고 다른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Clark 판사는 Patten 판사 (항소심에서)와 견해를 달리 하였으며 당사자들이 주장하였던 것처럼 R/G 3 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쟁가능한 해석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가지 해석 가운데 Clark 판사는 선주 측의 해석이 보증서의 상업적 목적에 부합하며 은행측의 해석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그는 일심 법원의 판결과 항소심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Simon Tuckey 판사와 견해를 같이 했다.

은행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Clark 판사는 조선소가 파산하였을 경우가 왜 선주에 대한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은행측은 신뢰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이렇게 마무리 하였다:

“.....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다면 보증서에서 그러한 경우의 환급 의무가 누락된 것은 일반상식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

선주의 항소는 이에 받아들여졌다.

결론(Conclusion)

대법원의 판결은 사건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해운계 전체적으로 환영 받아야 할 결정이다. 본건 보증서들의 해석에 상식적인 상업적 해석이 적용되었으며 이점이야 말로 상사법원을 설립하여 일차적으로 비즈니스 관행을 반영하도록 한 바로 그 이유이다.